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9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주요 내용별 검토	6
3. 관련기관 의견	13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7.
- (3) 회 부 일 : 2026. 1.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고, 중앙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조의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u> <u>2.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정보보호 등 운영</u>

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통계 관리 등
4.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5.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7.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
8.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9. 감염병 신고·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u>정하는 사항</u> ④ <u>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u>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u> ⑥ <u>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⑦ <u>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⑧ <u>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u>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u>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u>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u> ----- ----- -----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 2. (생략)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직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78조(벌칙) ----- ----- -----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1. 제7조의2제8항 또는 제74조----- ----- ----- -----
---	---

2. 주요 내용별 검토

- 일련의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경직된 기존의 공적 조직의 감시 및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감염병 발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선제 대응으로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먼저,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8조에 규정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는 목적과 유사한바 중앙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의3.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방안(이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라 한다)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 ⑤ (생략)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 또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구축·운영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수행 업무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통계 관리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으로,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등 13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조의2제3항)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
1.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1.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2.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통계 관리 등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 내성균 관리를 위한 항생제 사용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조의2제3항)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 제5조)
5. 국외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감염병에 관한 대국민 교육·홍보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감염병 정보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감염병 신고·감시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9. 검사·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들 업무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18개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특히 개정안의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 등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제1호),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

육·상담·정보보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은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질병관리청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감염병예방법」(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 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3. 관련기관 의견

-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 기획예산처는 감염병 대응업무는 국가(질병관리청) 본연의 역할에 해당하는 만큼 기관 신설을 통한 사무 위탁은 부적절하며, 기존 감염병대응체계(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역 질병대응센터(5개), 국립검역소(13개), 전국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병원체감시망 등)가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설립 없이도 감염병대응자원 간 유기적인 협업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01